

의안번호	2213888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9.
추 계 번호	25C5839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77조 (반환일시금)	현행법상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자의 본인 청구 시 반환일시금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음 ※(현행)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자는 청구 시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음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7조 (반환일시금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자에게 반환일시금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지급할 경우, 지급 이연에 따른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, 이와 동시에 분할 지급에 따른 이자 가산액을 함께 지급하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반환일시금의 지급 이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 이연된 금액을 운용함에 따라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
 - 만약 일부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 이연 기간에 마이너스의 운용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음
 - 운용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데, 이는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, 마이너스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여 원금이 손실되는 것은 수입 감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의 대상이 됨

- 안 제77조제3항은 반환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할 때 분할 지급에 따른 이자 가산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분할 지급을 선택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됨
- 그러나, 현 시점에서는 분할 수령을 선택할 대상자의 수와 분할 지급에 따라 발생할 운용수익의 규모(마이너스 운용수익 포함) 및 이자 가산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은 대상자의 청구 시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현 시점에서는 분할 지급을 원할 대상자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안 제77조제3항은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분할 기간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